

신라 흥덕왕대 손순에 대한 포상과 그 의미

The Reward for Sonsun in 〈Sonsun-Maea〉 and its Meaning

저자 (Authors)	이보령 Lee, Bo-ryeom
출처 (Source)	신라문화 56 , 2020.6, 61-82 (22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6 , 2020.6, 61-82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9576
APA Style	이보령 (2020). 신라 흥덕왕대 손순에 대한 포상과 그 의미. 신라문화, 56, 61-8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24 14:0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흥덕왕대 손순에 대한 포상과 그 의미

이보림*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흥덕왕이 내린 포상의 의미 |
| II. 손순매아 구조와 흥덕왕대 사회상 | V. 맺음말 |
| III. 모량부의 특성과 ‘歲給’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로 사상사·사회사적으로 분석됐던 손순매아에 대해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린 여타 이야기와의 차이점에 주목해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손순매아에서 손순이 사는 모량리와 손순이 받은 歲給의 의미를 분석하여 흥덕왕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했다.

모량리는 흥덕왕대로부터 100여 년 전인 효소왕대 익선 아간의 비리로 처벌을 받은 지역이며 모량리인에게는 관직진출과 출가 등이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관직진출과 출가는 유력세력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모량리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금지당한다면 관직진출과 출가가 가능한 지역 유력세력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려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담이 모량리 평민에게 전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흥덕왕이 손순에게 일회성 포상이 아닌 歲給을 준 것은 효행을 대대적으로 표창하는 의미보다 생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았다. 이후 석종이 나온 곳의 지명이 잘못 전해지거나 홍효사가 약탈된 것을 보면 이후 그리 강력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흥덕왕은 손순의 사례를 통해 모량리인들에게 ‘효’라는 가치를 실현하면 실제로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

더불어 모량리인에 대한 처벌이 언제 거뒀는지 알 수 없는 상화에서 두 가지를

* 인천투데이 기자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흥덕왕 이전에 처벌이 거뒀거나 흥덕왕 이후에 처벌이 거뒀을 경우다. 그러나 이후 모량리인에 대한 처벌이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사료가 명확하지 않아 후자로 생각하고자 한다. 100여 년 동안 처벌이 거뒀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람들의 인식에 박혀 ‘모량리인’에 대한 처벌이 ‘모량리’라는 지역에 대한 처벌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있다. 모량리에 대한 일종의 ‘터부’가 향덕과 지은의 사례와 달리 손순의 효행을 보여주는 지명이 남지 않은 이유로 보았다.

주제어 ● 효선편, 손순매아, 모량리, 흥덕왕, 세금(歲給)

I. 머리말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시대에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식을 묻으려 한 사람이 있었다. 『삼국유사』 효선편에 나오는 모량리 손순의 이야기다. 손순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모량부 서쪽 취산에 자식을 묻으려 했지만 곧 그만둔다. 아이를 묻기 위해 판 땅에서 돌로 만든 종이가 나왔기 때문이다. 종을 나무에 걸고 쳐보니 소리가 아름다워 마침내 궁까지 닿았다. 당시 왕이었던 흥덕왕은 이들의 사연을 듣고 집 한 채와 매해 곡식 50석을 하사한다. 손순은 이후 자신이 살던 집에 석종을 모셨다. 그곳은 곧 ‘홍효사’라는 절이 된다.¹⁾

손순매아에 대한 연구는 초창기 『삼국유사』 효선편 연구로 간단히 언급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로 효선편에 실린 이야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로, 먼저 찬자인 일연이 생전의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부록과 같은 편이라는 견해가 있다.²⁾ 이는 효선편의 주된 효 사상은 어머니에 대한 효선으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효선편 편찬에 대한 일연의 의도를 밝힌 초창기 연구이다.

여기서 나아가 일연의 효선편 편찬의 배경을 그가 살았던 사회상과 연관한 분석들도 있다. 효선편이 부록이라는 견해에 대해 일연이 편집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신라 당시의 이야기이며 출가로 인해 현실적인 효도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대한 답이라는 분석이 있다.³⁾ 효선편이 말하는 효는 부모를 성불득도케 하는 것이 참된

1) 『삼국유사』 권5, 효선9, 손순매아.

2) 민병하, 『삼국유사에 나타난 효선사상』, 『인문과학』 3, 1973.

효라는 불교적 신앙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효행설화를 제시해 유교적 효치를 불교적 효치로 전환시키고자 했다고 분석했다.⁴⁾

효선편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불교적인 효의 실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⁵⁾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효는 부모를 인도해 정법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모를 제도하여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효선편은 『삼국유사』가 편찬된 시기에 발생한 전란과 무너진 사회를 복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담았다는 견해가 있다.⁶⁾ 세속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복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효행이 요청됐고 파괴된 사원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불교적인 선행이 요구됐던 상황을 담았다고 분석했다.

효선편에 수록된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사회상, 즉 효선편이 보여주는 신라사회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넓적다리를 잘라 바친 향득의 사례인 효선편 ‘향득 사지할고공친 경덕왕대’를 경덕왕이 포상한 것을 대민교화가 목적인 일종의 교화사책으로 분석했다.⁷⁾ 또한 효선편의 배경이 신라 중대 전체주의에 일익을 담당할 화엄사상과 지배층을 대변하는 불교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해결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분석도 있다.⁸⁾ ‘효선쌍미’ 사상은 화엄종 실천신앙으로 자리해간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효선편이 신라 중대와 하대 왕권이 지배윤리로 충과 효를 권장하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분석한 견해도 있어, 충은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군신간의 윤리로 공적 지배영역에서 작용했고 효는 부자간에 이루어지는 가족 단위 윤리로 사적 활동공간에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⁹⁾

한편, 효선편 전반에 대한 이해에서 손순매아조에 집중하는 연구도 있다. 문학적 연구성과로는 설화로서의 효선편에 집중해 손순매아조의 이야기 구조와 그 설화적 특성을 정리한 연구가 있다. 또한¹⁰⁾ 손순매아조에 대한 연구로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 양상과 실제 이야기의 배경을 규명한 연구도 있는데,¹¹⁾ 구술로 채록된 설화와 손씨집안의 「대동보」와 비문 등을 참조해 손순의 가계와 효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손씨집안 기록을 기반으로 손순이 포상을 받은 시기를 흥덕왕 9년으로 비정하

3)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동아연구』 2, 1983.

4) 전경미, 「삼국유사 효선편을 통해 본 효행설화의 전승문법」, 『국학연구논총』 20, 2017.

5) 김상현, 「삼국유사 효선편 검토」, 『동양학』 30, 2000.

6) 장정태, 「삼국유사 효선편 연구」, 『한국의 청소년문화』 19, 2012.

7) 윤용혁, 「신라 효자 향덕과 그 유적」, 『백제문화』 11, 1978.

8)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 15, 1992.

9) 김영하, 「삼국유사 효선편의 이해」,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0, 2009.

10)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1: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1985.

11) 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11, 1990.

고 효선편의 서술은 당시까지 전해오던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파악했다. 손순매아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중국과 일본의 효행설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다.¹²⁾

손순매아조의 배경인 흥덕왕대 상황과 연계해 손순매아조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손순매아조가 당시 신라의 일반민들이 효 지상주의적 관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견해가 있다.¹³⁾ 흥덕왕의 포상은 사회적으로 효행이 지극한 덕행으로 평가되고 칭송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반민들도 아이를 죽여서라도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손순의 효행에 대한 흥덕왕의 포상을 당시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효를 사회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려는 의도하는 분석도 있다. 손순의 효를 흥덕왕대 정치상황과 연결해 당시 사회적 불안 속에서 효를 선양해 개별가호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¹⁴⁾ 또한 손순매아의 시대배경과 포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효행의 방식이 신라하대에 극단적으로 변화했고 이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¹⁵⁾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흥덕왕대 사회상과 연계해 손순매아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손순의 이야기가 당대의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¹⁶⁾ 먼저 손순매아조의 사료 구조와 당시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3장에서는 손순매아조의 공간적 배경인 모량부의 특성을 파악해보고 손순에게 내려진 포상의 성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포상의 성격을 흥덕왕의 대민지배방식의 일환으로 보지만, 모량리라는 지역 특성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Ⅱ. 손순매아 구조와 흥덕왕대 사회상

『삼국유사』 효선편 손순매아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노영근,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 『은지논총』 26, 2010.

13) 정운용, 『삼국유사 손순매아조로 본 신라인의 효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2009.

14)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손순의 효를 통해 본 ‘포창’의 의미』,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2001.

15) 고소진, 『손순매아조와 빈녀양모조를 통해 본 신라 하대 효』, 『대구사학』 115, 2014.

16) 손순의 이야기에서 석중 소리에 관해 보고를 받은 흥덕왕이 중국의 과거 이야기를 거론한 것은 그만큼 외부로부터 차용된 이야기로 가공된 것일 가능성을 오히려 낮춰주는 요소로 보는 연구가 있다. 百濟橫賊이 약탈한 이야기나 석중이 출토된 지명을 언급하는 등 일연 또는 그 이전 기록자가 기록 당시 지명을 확인한 흔적 등이 근거다(하일식, 『『삼국유사』의 빈민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pp.217~218).

A-1) 孫順은 [古本에는 孫舜이라 썼다] 모량리 사람으로 아버지는 鶴山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여 쌀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의 이름은 運鳥이다.¹⁷⁾

A-2) 손순에게 어린 아이가 있는데, 매번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았다. 손순이 그것을 곤란하게 여겨 아내에게 말하길, “아이의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려운데,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께서 굶주림이 어찌나 심하겠소! 아이를 묻고, 어머니의 배를 채웁시다” 하였다. 이에 아이를 등에 업고 醉山[산은 모량리의 서북쪽에 있다]의 북쪽 교외에 가서 땅을 파는데, 갑자기 돌로 만든 종이나와 심히 기이하였다. 부부는 놀라고 괴이하여, 숲의 나무 위에 걸어 놓고 종을 쳐서 시험하였는데, 은은하니 사랑스러웠다. 부인이 말하길, “특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 아이의 복이니, 묻지 말시다” 하였다. 남편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이에 아이와 종을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종을 들보에 매달아 두드리니, 소리가 귤에까지 들렸다.¹⁸⁾

A-3) 흥덕왕이 이것을 듣고, 주변에 일러 말하길, “서쪽 교외에서 특이한 종소리가 있는데 맑고 멀리 들리니, 속히 이것을 조사하라” 하였다. 왕의 명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그의 집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말하길, “옛 郭巨가 아이를 묻으니 하늘이 금 술을 주었는데, 지금 손순이 아이를 묻으니 땅에서 돌 종이 솟아났다. 앞의 효와 뒤의 효는 하늘과 땅에 함께 본보기다” 하였다. 이에 집 1區를 내리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어, 순수한 효심을 높이도록 하였다.¹⁹⁾

A-4) 손순은 옛 거처를 절로 하고, 弘孝寺라 이름하고 석종을 안치하였다.²⁰⁾

A-5) 眞聖王 대에 백제의 황포한 도적이 그 마을에 와 종은 없어지고 절만 남았다. 그 종을 얻은 땅을 完乎坪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잘못 전해져 枝良坪이라 한다.²¹⁾

위의 사료는 손순매아조 내용에 따라 사료를 구분한 것이다. A-1)은 손순이 모량리 사람임과 손순의 가계를 밝히고 있다. 손순의 신분에 대해서는 평민으로 보는 견해

17) 『삼국유사』 권5, 효선9, 손순매아 “孫順者[古今作孫舜]牟梁里人, 父鶴山. 父沒, 與妻同但傳人家得米穀養老孃. 孃名運鳥”

18) 『삼국유사』 권5, 효선9, 손순매아 “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謂其妻曰, “兒可得母難再求, 而奪其食母飢何甚. 且埋此兒以畀母腹之盈” 乃負兒故醉山 山在牟梁西北. 北郊堀地, 忽得石鐘甚奇. 夫婦驚怪, 乍懸林木上試擊之, 舂容可愛. 妻曰, “得異物殆兒之福不可埋也.” 夫亦以爲然, 乃負兒與鍾而還家懸鐘於梁扣之, 聲聞于闕”

19) 『삼국유사』 권5, 효선9, 손순매아 “興德王聞之謂左右曰, “西郊有異鍾聲, 清遠下類速檢之” 王人來檢其家, 具事奏王, 王曰, “昔郭巨瘞子天賜金釜, 今孫順埋兒地湧石鍾. 前孝後孝覆載同鑑” 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以尙純孝焉”

20) 『삼국유사』 권5, 효선9, 손순매아 “順捨舊居爲寺, 號弘孝寺安置石鍾”

21) 『삼국유사』 권5, 효선9, 손순매아 “眞聖王代百濟橫賊入其里, 鍾亡寺存. 其得鍾之地名完乎坪, 今訛云枝良坪”

와²²⁾ 6두품으로 보는 견해가²³⁾ 있다. 손순과 아내가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해 쌀을 얻어 살았기 때문에 손순이 설령 6두품이었다²⁴⁾ 실상은 평민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A-2)는 손순의 효행이 드러나는 문단이다. 손순은 ‘傭作’ 형태로 살아가지만 생계가 어려워 자식과 부모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손순은 결국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물어버리자는 제의를 하고 이를 실천하려 한다.²⁶⁾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손순과 아내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손순은 아이는 다시 얻으면 된다는 이유로 땅에 묻으려 한다. 특히 손순의 목소리는 자식을 희생시키는 고통은 드러나지 않고 대단히 규범적이며 효는 이러해야 한다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²⁷⁾ 이는 찬자인 일연이 교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 지배층의 목소리를 확대하는²⁸⁾ 과정에서 다듬어진 것으로 보인다.

A-3)에는 석종의 역할과 흥덕왕의 포상이 드러난다. 흥덕왕은 손순의 일화를 종소리를 통해 알게 된다. 이때 석종은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왕이 존재하며 선정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

22) 김기섭, 앞의 논문, 2001, p.405 ; 김영하, 앞의 논문, 2009, p.21 ; 고소진, 앞의 논문, p.6.

23) 이기백, 『신라 6두품 연구』, 『성곡논총』 2 ; 『신라정치사회사연구』, 1974, pp.55~56. 이씨, 최씨, 설씨와 함께 모량부 손씨도 6두품이었다고 보고 있다.

24) 손순의 아내가 牛峯太守 白永發의 딸이라는 기록이 있다(임재해, 앞의 논문, 1990, p.241). 이는 손씨 대동보와 비문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牛峯이라는 지명은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문무왕 13년(673)에 당 군사가 고구려의 牛峯城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있다(『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3년 “冬, 唐兵攻高句麗牛峯城, 降之. 契丹·靺鞨兵攻大楊城·童子城, 滅之”). 牛峯城은 현재 황해 금천군 우봉 일대에 있었던 성으로 비정하고 있다(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66, p.121). 峯과 峯의 유사성으로 손순의 아내가 牛峯城 태수의 딸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손순이 6두품일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순 아내의 기록이 손씨 후손들에 의한 것으로 윤색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료 비판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5) 김영하, 앞의 논문, 2009, p.21.

26) 부모가 자식을 묻는 결정을 효행이라고 포상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효라는 선을 위해 자식의 목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자손의 희생으로 여유로운 음식을 부모가 즐길 수 있다는 의식은 단순히 자기희생적 효의 한 모습이지만 바람직한 효의 실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석종의 발견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부당한 효행위를 통제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장정태, 『삼국유사 효선편 연구』, 『한국의 청소년문화』 19, 2012, pp.145~146). 한편, 손순이 아이를 묻는 결심에 대해 그만큼 신라인들 아이를 죽여서라도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정운용, 앞의 논문, 2009, p.146).

27) 전경미, 앞의 논문, 2017, p.192.

28) 전경미, 앞의 논문, 2017, pp.206~207.

중들의 생활상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²⁹⁾

흥덕왕은 손순의 효행을 알아보고 손순에게 집(屋) 1區와 해마다 벼 50석을 포상의 의미로 준다. 흥덕왕이 손순에게 포상을 한 시기는 흥덕왕 8년⁽⁸³³⁾으로 본 견해와³⁰⁾ 흥덕왕 9년⁽⁸³⁴⁾으로 보는 견해가³¹⁾ 있다.

B-1) 8년 봄, 국내에 큰 기근이 들었다.³²⁾

B-2) 8년 겨울 10월 많은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었다.³³⁾

B-3) 9년 겨울 10월에 나라 남쪽 주군을 순행하여 늙은이와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 노인을 방문하여 곡식과 포목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³⁴⁾

사료 B)군은 흥덕왕이 손순을 포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흥덕왕 8년과 9년 기록 중 일반 민들의 상황이 드러나는 사료를 추린 것이다. 이를 보면 흥덕왕 9년의 위문은 흥덕왕 8년 기근과 역병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³⁵⁾ 다만 손순이 거주하는 모량리는

29) 최혜진, 『효행설화와의 구조와 의미-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 1996, p.5.

30) 김기섭, 앞의 논문, 2001, p.411.

31) 임재해, 앞의 논문, 1990, p.241 ; 고소진, 앞의 논문, 2014, p.8.

32)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8년 “春, 國內大飢”

3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8년 “冬十月, 多民疫死”

34)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9년 “冬十月, 巡幸國南州郡, 存問耆老及鰥寡孤獨, 賜穀布有差”

35) 신라 하대는 천변재이가 많이 발생했다. 헌덕왕대와 흥덕왕대의 기근과 재난발생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헌덕왕·흥덕왕대 재해와 기근현상

왕대	시기	내용	결과
헌덕왕	6년(814) 5월	홍수	수해피해지역 위문 租調 1년 간 면제
	7년(815) 7월	西邊州郡기근, 도적봉기	군사를 내어 討平
	8년(816)	흉년과 기근	백성 170명이 절강 동쪽으로 식량구함
	9년(817) 5월	不雨	산천에 기도
	9년(817) 10월	굶어죽음	倉穀으로 구휼
	11년(819) 3월	초적 봉기	초적 체포
	12년(820) 봄	가뭄	
	12년(820) 겨울	기근	
	13년(821) 봄	굶주려 자손팔아 自活	
	흥덕왕	2년(827) 가을	가뭄
7년(832) 봄		가뭄	避正殿, 減常膳 內外獄囚을 사면
7년(832) 가을		기근, 도적봉기	백성 按撫
8년(833)		기근	
8년(833) 10월		역병으로 사망	

경주 서쪽이기 때문에 흥덕왕 9년의 위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위문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손순의 효행이 전해졌을 것이다.³⁶⁾

흥덕왕은 손순의 사례를 치하하면서 괘거의 사례를 들고 있다. 괘거의 사례는 중국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다.³⁷⁾ 괘거는 손순과 마찬가지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땅에 묻으려 하지만 땅을 판 자리에는 황금 술이 나온다. 괘거는 황금술을 보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 이를 진상했고 천자는 괘거에게 다시 황금술을 돌려 주었다.³⁸⁾ 괘거와 손순의 차이점은 황금술 대신 석종이 나왔다는 것과 포상의 내용이다.

손순은 집과 매해 벼 50석을 받게 된다. 이는 손순의 생계와는 별개의 수입으로 가계 안정에 기여했으며 이후 손순이 홍효사를 창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³⁹⁾

A-4)는 홍효사 창건 기사이다. ‘홍효사’는 ‘효를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⁴⁰⁾ 손순이 발견한 석종을 안치한 절로 손순의 효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A-5)는 석종의 유실과 지명을 전하고 있다. 진성왕대 침입기록에 대해서는 진성왕 10년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 진성왕 10년(896) 도적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다. 바지를 붉은 색으로 하여서 스스로를 다르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赤袴賊이라 했다. 주현을 도륙하여 해를 입히고 수도의 서부인 모량리까지 와서 민가를 노략질하고 갔다.⁴¹⁾

C)는 진성왕 10년(896) 모량리 약탈 기사다. 여기서는 모량리를 약탈한 적들이 백제가 아니라 ‘赤袴賊’이라 부르고 있다. 석종이 없어진 모량리 약탈사건은 적고적의 소행으로 보이며 이를 백제로 오인해 기술했을 가능성이 있다.⁴²⁾

손순의 상황과 흥덕왕의 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 전반적인 사회상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36) 고소진, 앞의 논문, 2014, p.8.
37) 괘거에 대한 중국의 이야기는 모두 6곳에서 찾을 수 있다. 晉 葛洪의 『抱朴子 內篇』, 晉 干寶의 『搜神記』, 徐廣의 『孝子傳』, 釋道世의 『法苑珠林』, 句道興의 『搜神記』, 燉煌寫本 『孝子傳』이다. 노영근, 앞의 논문, 2010, pp.118~121.
38) 천자가 괘거를 표창하는 내용은 句道興의 『搜神記』, 燉煌寫本 『孝子傳』에만 등장한다.
39) 고소진, 앞의 논문, 2014, pp.9~10.
40) ‘홍효사’라는 절의 이름을 흥덕왕이 내려줬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소진, 앞의 논문, 2014, pp.10~11). 다만 흥덕왕이 애초에 절의 창건을 위해 손순에게 매해 50석을 포상으로 내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후술하겠다.
41)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10년 “賊起國西南, 赤其袴以自異, 人謂之赤袴賊. 屠害州縣, 至京西部牟梁里, 劫掠人家而去”
42) 정운용, 앞의 논문, 2009, p.132 ; 고소진, 앞의 논문, 2014, p.12.

D) 흥덕왕 3년 여름 4월, 한산주 표천현에서 요사스러운 인물[妖人]이 자칭 빨리 부자가 되는 술법[速富之術]이 있다고 하여 군중들이 자못 여기에 현혹되었다.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邪道로서 군중을 현혹하는 자를 형벌에 처하는 것은 先王의 법이다.”라고 하며 그를 먼 섬에 유배보냈다.⁴³⁾

D)는 흥덕왕 3년(828) 한산주 표천현 지역에 나타난 妖人이 빨리 부자가 되는 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현혹해 처벌받은 내용을 전한다. 여기서 妖人이 군중을 현혹하는 방법인 ‘速富之術’을 당시 사무역의 활성화로 교역을 위해 비합법적 품목을 제조하거나 채취해 부를 축적하거나 심지어는 노비 약매를 하거나 해적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연구가 있다.⁴⁴⁾ 이에 따르면 妖人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문란하게 만드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했던 흥덕왕대 사회는 지속적인 천변재이로 살기 힘든 와중에 사무역이 횡행해 경제적 문란함도 더해가던 시기였다.⁴⁵⁾ 흥덕왕이 효행을 표창하여 손순에게 매해 곡식 50석을 하사하게 된 것도 국가가 장려하는 가치인 효를 따르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퍼트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Ⅲ. 모량부의 특성과 ‘歲給’

손순은 모량리 사람으로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도로 흥덕왕에게 매해 곡식 50석과 집 한 채를 포상으로 받았다. 손순이 받은 포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국유사』 효선편에 기록된 이야기 중 손순과 마찬가지로 포상을 받은 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⁴⁶⁾

4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3년 “夏四月, 漢山州瓢川縣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惑之. 王聞之曰, “執左道以惑衆者刑之, 先王之法也” 投畀其人遠島”

44) 손홍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사회변동과 지방사회』, 『대구사학』 135, 2019, pp.15~24.

45) 흥덕왕대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된 명분은 신라인이 해적에 의해 납치돼 당의 노비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흥덕왕 3년 “夏四月, 淸海大使弓福, 姓張氏 [一名保臯], 入唐徐州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 鎮淸海 [淸海今之莞島]”). 速富之術은 당시 사무역을 통한 비합법적 부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며 흥덕왕은 이를 막고자, 장보고는 무역을 독점하고자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견해가 있다(손홍호, 앞의 논문, 2019, pp.23~26).

46) 『삼국유사』에만 기록된 眞定, 大成, 遜順 등 효행담 중 특히 진정과 대성의 효행담이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며 이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김상현, 『삼국유사 효선편 검토』, 『동양학』 30, 2000). 이때 손순의 이야기는 진정과 대성의 이야기보다는 향덕과 지은의 이야기와 사례가 유사하다. 모두 평

〈표 1〉 효행에 따른 포상의 사례

인물	장소	포상	지역 표창	시대	원전
向得	熊川州	租 500碩		景德王	『삼국유사』 권5 효선9
向德	熊川州 板積鄉	租 300斛 宅 1區 口分田 약간	立石紀事 號其地云孝家	天寶 14년 (755)	『삼국사기』 권48 열전8
貧女	芬皇寺의 東里	穀 500石 宅 1廬	旌其坊爲孝養之里	眞聖王	『삼국유사』 권5 효선9
知恩	韓歧部	租 500 家 1區 復除征役	孝養坊	大王	『삼국사기』 권48 열전8

<표 1>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재된 효행에 따른 포상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향득과 향덕, 빈녀와 지은의 사례는 같은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한다.⁴⁷⁾

먼저 向得(向德)의 사례를 살펴보자. 향덕은 웅천주 사람으로 흉년이 들어 아버지가 굶어죽게 되자 자신의 넓적다리를 잘라 아버지를 먹인 인물이다. 이 일로 향덕은 경덕왕으로부터 조 500석을 받는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기재된 내용은 더 구체적이다. 특히 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 300석과 집 한 채, 구분전 약간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후자의 기록이 더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⁴⁸⁾ 『삼국사기』를 보면 이 일이 있는 후 마을에 비석을 세워 효행을 알리며 이후 향덕이 살던 곳이 孝家가 됐다고 전한다.

『삼국유사』의 貧女와 『삼국사기』 지은의 사례도 앞서와 마찬가지로다. 지은은 어머니를 위해 품팔이를 해가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남의 집 종이 되어 어머니를 봉양한다. 어머니는 자식이 종이 되어 마련한 음식이 편하지 않다며 서로 슬퍼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효종왕이 곡식과 의복을 보냈다. 이 이야기가 왕에게까

민으로 어렵게 사는 인물들이며 극단적인 효를 실행해 왕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이야기다.

47) 향덕과 지은의 사례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세부내용 상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사기와 삼국유사 편찬시 참조했을 원전 상의 차이에 근본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윤용혁, 『신라 효자 향덕과 그 유적』, 『백제문화』 11, 1978, p.53). 이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는 서로 그 전거의 계통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김수태, 『『삼국유사』 ‘향득사지’ 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학회학술발표논문집』 30, 2009, p.90).

48) 『삼국사기』 성각전에 ‘웅천주 향덕 고사에 따라 가까운 현의 조 300석을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김수태, 앞의 논문, 2009, pp.93~95).

지 닿아 진성왕은 곡식 50석과 집 1채를 하사하고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집을 지켜 줄 군대도 보내준다. 이 내용은 두 기록이 동일하다. 『삼국사기』의 경우 요역을 면제 해줬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빈녀와 지은의 기록에는 둘 다 『삼국사기』 향덕의 사례처럼 그 지역에 효행을 기념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 『삼국유사』에는 그 坊에 旌를 세워 효녀가 봉양한 마을 [孝養之理]이라 했다. 『삼국사기』에는 孝養坊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 두 사례와 손순이 받은 표창을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⁴⁹⁾ 하나는 孝家나 孝養처럼 효행을 특징하는 마을의 명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앞선 사례들의 포상이 일회성인 반면에 손순은 매해 50석씩 포상을 받았다는 점이다.

먼저 효행을 특징하는 마을 명칭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량리⁵⁰⁾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 제32대 孝昭王 때 竹曼郎의 낭도 중에 得烏 [또는 谷] 級干이 있었다. 風流黃卷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출근하였다. 열흘 동안 보이지 않기에 낭이 그의 어머니를 불러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幢典인 牟梁의 益宣 阿干이 내 아들을 富山城의 倉直으로 뽑아갔는데, 빨리 가느라고 미처 낭에게 말씀드릴 겨를도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낭이 말하기를, “당신 아들이 만약 사사로운 일로 그곳에 갔다면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공사로 갔다니 마땅히 가서 대접 해야겠소”라고 하고, 이에 舌餅 한 합과 술 한 병을 가지고 左人[우리말에 咻叱知라고 하니 奴僕을 말한다]을 거느리고 갔다. 낭의 무리 1백 37명도 위의를 갖추고 따라갔다.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闔人]에게 득오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문지기는 답하기를, “지금 익선의 밭에서 예에 따라 부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낭은 밭으로 가서 가져간 술과 떡을 대접하였다.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니 함께 돌아가려고 했으나 익선은 굳이 거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使吏 侃珍이 推火郡 能節의 조 30석을 거두어 성 안으로 수송하고 있었는데, 죽만랑이 선비를 소중히 여기는 풍모를 아름답게 보고, 익선의 어리석은 고집과 융통성 없음을 비루하게 여겨, 가지고 가던 조 30석을 익선에게 주고 도움

49) 향덕과 지은의 경우처럼 일회성으로 포상하고 비석이나 기를 세워 효행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포상이다. 이에 대해 아직 효행에 대한 포상이 체계화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연구가 있다 (윤용혁, 앞의 논문, 1978, pp.18~19).

50) 『삼국유사』에 수록된 빈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部와 里가 혼용돼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신라 왕경에서는 部-里-坊制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마을을 의미하는 里를 사용한 것이라 본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모량리는 ‘모량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하일식, 앞의 논문, 2007, pp.221~221).

을 청하였다. 그래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또 珍節 舍知의 말안장을 주니 그때야 허락하였다.

조정의 花主가 이를 듣고 사자를 보내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러움을 씻기려고 하니 익선이 도망하여 숨었으므로 그 만아들을 잡아갔다. 그때는 仲冬의 몹시 추운 날이었으므로 성 안의 못에서 목욕을 시켰더니 이내 얼어 죽었다. 대왕이 이를 듣고 칙령을 내려, 모랑리 사람으로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내어 다시는 관서에 관계하지 못하게 하고, 승복[黑衣]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만약 승려가 된 자라도 鐘鼓를 단 큰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史에게 명하여 간진의 자손을 올려 浬定戶孫으로 삼고 그를 표창하였다. 이때 圓測法師는 海東의 고승이었으나 모랑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직을 주지 않았다…….51)

사료 E)는 효소왕대죽지랑조의 일부다. 효소왕대죽지랑조는 3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죽지랑과 낭도 득오의 관계, 익선의 탐욕과 모랑리인에 대한 처벌 이야기다. 둘째는 화랑 죽지랑의 출생담이며 마지막으로 득오의 모죽지랑가를 들 수 있다.52) 사료 E)는 모랑리인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죽지랑은 자신의 낭도인 득오가 부산성 익선 아간의 밭에서 사사로이 노역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빼내오고자 한다. 그러나 익선 아간은 이를 여러 차례 거절했고 결국 侃珍이 뇌물을 주자 득오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정에 알려져 익선 아간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도망가 그의 아들이 대신 얼어 죽게 되고53) 효소왕은 모랑리에 대대적인 처벌을 감행한다. 사료 E)는 모랑리인으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내 다시는 관서에 관계하지 못하게 하고 승복을 입지 못하게 하며 이미 승려인 자는 鐘鼓가 있는 큰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등 모랑리인

51) 『삼국유사』 권2, 기이2, 효소왕대죽지랑 “第三十二孝昭王代, 竹曼郎之徒有得鳥[一云谷級干. 隸名於風流黃卷追日仕進. 隔旬日不見, 郎喚其母問爾子何在. 母曰“幢典牟梁益宣阿干以我子差富山城倉直, 馳去行急未暇告辭於郎.” 郎曰“汝子若私事適彼則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須歸享矣.” 乃以舌餅一合酒一缸卒左人[鄉云皆叱知, 言奴僕也]而行. 郎徒百三十七人亦具儀侍從. 到富山城閭人得鳥失奚在. 人曰“今在益宣田隨例赴役.” 郎歸田以所將酒餅饗之. 請暇於益宣將欲偕還,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侃琠管收推火郡能節租三十石輸送城中, 美郎之重土風味,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贈益宣助請. 猶不許又以琠節舍知騎馬鞍具賂之乃許. 朝廷花主聞之, 遣使取益宣將洗浴其垢醜, 宣逃隱掠其長子而去. 時仲冬極寒之日, 浴洗於城內池中仍合凍死. 大王聞之, 勅牟梁里人從官者並合黜遣更不接公署, 不著黑衣, 若爲僧者不合入鍾鼓寺中. 勅史上侃琠子孫爲浬定戶孫標異之. 時圓測法師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故不授僧職……”

52) 여성구, 『신라 효소왕대의 『삼국유사』 기록 검토』, 『한국학논총』 44, 2015, pp.61~62.

53) 익선 아간의 아들이 대신한 처벌인 ‘洗浴’에 대해 물을 흘려보내 죄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한영화, 『한국 고대의 형틀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p.120).

에 대한 처벌 내용을 보여준다.

모량리 처벌사건을 찬자인 일연은 효소왕대로 파악하고 있다.⁵⁴⁾ 모량리 처벌사건은 대개 효소왕대와 진평왕대로 해석이 갈린다. 효소왕대로 이해하는 이유는 문무왕 3년 부산성을 축조했다는 기사를⁵⁵⁾ 부산성 신축기사로 보기 때문이다.⁵⁶⁾ 효소왕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주로 이 기사를 죽지랑의 젊은 시절인 진평왕대 혹은 선덕여왕 초년으로 이해한다.⁵⁷⁾ 이 밖에 이 사건을 효소왕대로 상정하고 대대로 왕비를 배출하는 모량부 박씨의 세력 약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건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⁵⁸⁾ 이 경우 모량부 처벌은 이를 빌미삼아 모량부 전체를 억눌러 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모량리인에 대해 효소왕대 내려진 차별정책이 언제 거둬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다. 특정시기 차별정책이 완전히 거둬들여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효소왕대 모량리에 대한 처벌이 있는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됐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신라에서 왕경내의 한 지역에 대해 이런 식의 차별정책을 시행한 것은 처음이며 이에 대한 충격이 상당했으리라는 점이다. 모량리 차별정책이 이후 철폐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형성된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의식은 이후에도 잔존했으리라 생각된다.

손순이 사는 마을에 손순의 효행을 찬양하는 마을 명칭이 따로 남지 않은 이유들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앞서 A-5)에서 손순이 석종을 발견한 장소의 지명도 제대로 전승되지 않은 것은 모량리인에 대한 일종의 ‘터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대적으로 표창해 비석과 旌을 세워 기념하는 향덕과 지은의 사례에 비하면 손순이 사는 마을에 대한 찬양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손순이 받은 포상의 특징인 ‘歲給’을 살펴보기 위해 신라 사례와 고려의 사례를 각각 비교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신라에서 확인되는 ‘歲賜’의 사례다.

F-1) 문무왕 13년 1월 강수를 사찬으로 삼고, 매해 조 200석을 주었다.⁵⁹⁾

54) 여성구, 앞의 논문, 2015, p.62.

55)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3년 “春一月 築富山城”

56) 이밖에 죽지랑조 기사를 효소왕대로 인식하는 논고는 다음과 같다. 이홍직, 『삼국유사 죽지랑조 잡고』,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김재경,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 14, 1978; 홍기삼, 『효소왕대 죽지랑 고』, 『불교학보』 30, 1993.

57) 집사부 중시와 장군 등 요직을 거친 죽지가 만년에 화랑이 되어 모량부의 익선에게 그의 낭도인 득오의 휴가를 간청하고 뇌물까지 주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이종욱, 『삼국유사 죽지랑조에 대한 일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2, 1986.

58) 황병익, 『『삼국유사』 죽지랑조와 『모죽지랑가』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35, 2007, pp.193~195.

5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春一月 拜强首爲沙濱, 租二百石”

F-2) 강수는 일찍이 생계를 도모하지 않아서 집이 가난하였으나 즐거워하였다. 왕이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해마다 新城의 조 100석을 하사하도록 하였다.

문무왕은 “강수는 문장짓는 일을 맡아 편지로써 중국과 고구려, 백제 두 나라에 뜻을 다 전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우호 맺음도 성공할 수 있었다. 나의 선왕께서 당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였던 것은 비록 군사적 공로라고 하나 또한 문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강수의 공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사찬의 관등을 주고 녹봉을 늘려 해마다 조 200석씩으로 하였다.⁶⁰⁾

F-3) 성덕왕 11년 가을 8월, 김유신의 아내를 부인으로 봉하고, 매해 곡식 1천 석을 주었다.⁶¹⁾

F-1)과 F-2)는 모두 강수의 이야기다. 강수는 문무왕대 해마다 조 100석을 받았는데 사찬이 되면서 200석을 받았다. F-3)은 김유신의 아내가 부인으로 봉해지면서 매해 1천석씩 곡식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공식적인 자격에 대한 대가로 곡식을 하사받았다. 즉 강수의 경우 沙滄이라는 관등의 대가로, F-3)은 김유신의 아내라는 신분의 이유로 곡식을 하사받았다. 이들은 적어도 6두품 이상이었을 것이며 녹읍 혹은 식읍의 형태로 곡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이 죽어도 곡식을 지속적으로 하사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⁶²⁾

손순은 효행의 대가로 매해 50석을 받았다. F군에 비하면 그 양이 적은 편이다. 이는 손순이 일반적인 두품이 없는 평민이라는 의미이며 그가 받은 포상은 철저히 그의 효행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손순이 받은 歲給은 손순이 종신토록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향덕의 사례를 따라 조 300석을 하사받았다는 성각의 사례처럼 이러한 포상은 대개 선례를 따르기 마련이다.⁶³⁾ 신라의 경우 위와 같이 매해 곡식을 하사하는

60) 『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 “……强首未嘗謀生, 家貧怡如也. 王命有司, 歲賜新城租一百石. 文武王曰, “强首文章自任, 能以書翰, 致意於中国及麗·濟二邦, 故能結好成功. 我先王請兵於唐, 以平麗·濟者, 雖曰武功, 亦由文章之助焉. 則强首之功, 豈可忽也.” 授位沙滄, 增俸歲租二百石”

6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11년 “秋八月, 封金庾信妻爲夫人, 歲賜穀一千石”

62) 녹읍은 祿料의 뜻으로 국가가 지급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한다. 이때 지배는 경제적 지배를 말하며 조세는 물론, 貢賦와 力役까지도 포함한다. 식읍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報酬 혹은 恩賞의 뜻으로 하사되는 것이다. 식읍은 대체로 녹읍보다 규모가 큰 것이며 식읍의 수급자들은 대개 최고 귀족들이었다. 식읍은 몇 백 호 내지는 몇 천 호라는 호수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녹읍과 식읍은 모두 세습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것이다(강진철, 『개정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7, pp.11~16).

63) 『삼국사기』 권48, 열전8, 성각 “……大臣角干敬信·伊浪周元等聞之, 國王以熊川州向德故事, 賞近縣租三百石……”

것은 종신토록 이어졌다. 매해 곡식을 하사하는 경우는 종신토록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G-1) 5월 西北面兵馬使가 보고하기를, “平虜鎭의 한 여인이 있는데 아들 9명을 낳아 모두 文武에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곳 관리에게 명하여 해마다 租 20섬[石]을 종신토록 주게 하였다.⁶⁴⁾

G-2) 肅宗 2년(1097) 9월 왕이 새로 及第한 林元通 등을 불러 접견하고 술과 음식, 衣服을 하사하였다. 이 해에 金富轍의 어머니에게 쌀 40石을 하사하였다. 옛 제도에 아들 3명이 등과(登科)하면 해마다 그 어머니에게 大倉의 쌀 30석을 지급하였는데, 김부철의 형제 4명이 등과하였으므로, 10석을 더하여 하사하고, 드디어 常例로 삼도록 하였다.⁶⁵⁾

G-3) <毅宗> 10년(1156) 6월에 詔書를 내리기를, “올해에 壯元한 黃文莊은 병인년(1146) 科擧에 장원한 黃文富의 아우이다. 형제가 모두 장원(魁科)을 차지한 것은 예전에도 듣기 어려운 일이다. 마땅히 아들 3명이 登科한 예에 준하여 해마다 그 어머니에게 粟[粟] 30石을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⁶⁶⁾

다음은 고려시대 歲給 사례들 중에서 손순이 받은 歲給의 양과 유사한 사례들이다. 손순의 사례와 다른 점이라면 손순은 늙은 어머니에 대한 봉양의 대가로 세금을 받았다면 G군의 사례들은 자식의 출세를 치하하는 의미로 부모에게 세금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공을 세운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과 가족관계로 묶인 여성들에게 세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 여성들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군공을 세운 이들을 ‘내조’하거나, 혹은 그들을 바람직하게 ‘양육’한 가족공동체의 주역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歲給의 방식도 상당히 체계적이다. G-2)의 경우 아들 3명이 등과하면 쌀 30석을 지급했는데 형제 4명이 등과했으니 10석을 더해 하사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포상제도에 일정한 기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G-1)처럼 종신토록 준다는 표현이 있는 만큼 나머지 사례의 歲給도 종신토록 준 게 아닐까 생각된다. 고려는 적어도 국가의 최소구성단위를 가족공동체로 보고 이를 유지하고자, 특히 ‘바람직한’ 가족공동체의

64) 『고려사』 세가 권22, 고종 10년 “五月 西北面兵馬使報, “平虜鎭有一女, 生九子, 皆有文武才” 命其官, 歲給租二十石, 終其身”

65) 『고려사』 권28, 志28, 選舉2, 과목2, 승장의 전례 “肅宗二年九月 引見新及第林元通等, 賜酒食衣服. 是年, 賜金富轍母, 米四十石. 舊制, 三子登科, 歲給母大倉米三十石, 以富轍兄弟四人登科, 加賜十石, 遂以爲常”

66) 『고려사』 권78, 志28, 選舉2, 과목2, 승장의 전례 “十年六月 詔, “今年壯元黃文莊, 乃丙寅科狀元文富之弟也, 兄弟俱占魁科, 在古罕聞. 宜准三子登科例, 歲給母粟三十石”

유지를 위해 여성들에게 포상으로서 歲給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손순의 사례는 고려시대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포상의 정도가 뒤쳐지지 않는다. 시기가 200~300년 차이가 있는 고려시대의 사례를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손순의 사례와 같이 효와 양육 등 가정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포상하는 의미와 사례의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손순의 사례가 정형화돼 고려시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⁶⁷⁾

IV. 흥덕왕이 내린 포상의 의미

손순의 효행에 대해 흥덕왕이 내린 포상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손순이 살았던 마을에서 손순의 효행을 찬양하는 마을의 명칭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손순에게 歲給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손순에 대한 흥덕왕의 포상은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별가호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사회의 해체를 막고자 한 것이라 이해된다.⁶⁸⁾ 손순에 대한 포상이 기본적으로 가정 갈등의 원인인 경제적 요소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유지하려 했던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손순이 모량리인이며 모량리라는 지역이 효소왕대 대대적인 금지령이 발표된 지역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손순에 대한 포상은 향덕이나 지은과는 달리 상당히 현실적이다. 고려시대처럼 일정 정도의 곡식을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것은 일회성으로 많은 양의 곡식을 하사받는 것보다도 생계를 이어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진성왕이 약탈을 우려해 군사를 내려준 것과 같은 위험도 낮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흥덕왕은 왜 손순에게 歲給이라는 형식의 포상을 내렸을까. 손순이 살았던 모량리라는 지역이 일종의 ‘터부’가 작용했던 공간이라고 볼 경우 그 ‘터부’는 하층민에게 유독 가혹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빈민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10여 편 정도 등장한다.⁶⁹⁾ 이 중 모량리의 가난한 일반 민에 대한 이야기는 손순 뿐 아니라 ‘대성효이세부모’에도 등장한다.

67) 일회성의 포상을 받은 향덕과 지은의 사례는 아직 포상이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는 연구도 있다(윤용혁, 앞의 논문, 1978, pp.18~19).

68) 김기섭, 앞의 논문, 2001, p.417; 고소진, 앞의 논문, 2014, p.12.

69) 하일식, 앞의 논문, 2007, pp.206~211.

H) 牟梁里[浮雲村이라고도 한다]의 가난한 여자 慶祖에게 아이가 있었다.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편하여 城과 같아, 이로 인하여 이름을 大城이라 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로 인하여 부자[貨殖인 福安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였다. 그 집에서 밭 몇 畝를 나누어 주어, 입고 먹는 비용으로 하였다…….70)

H)는 모량리 빈민의 일상을 보여주는 자료다. 김대성의 어머니인 慶祖는 모량리에 살았으며 집이 가난해 부자의 집에서 밭을 빌려 먹고 살았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묘사도 나오는데, 손순이 노모를 대신해 아이를 묻어버리려 했던 것도 생계로 인한 비극을 보여준다.⁷¹⁾ 모량리에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량리에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는 일반민들이 상당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신라 최고위 귀족들이 일반 민들에게 고리대를 쥐 노비로 삼거나 재산을 불리는 일이 횡행한 것을 생각해 보면⁷²⁾ 모량리인으로 관직으로의 진출과 출가가 금지됐던 효소왕대 처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흥덕왕은 이러한 모량리의 상황을 고려해 손순에게 歲給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순은 이후 歲給으로 생을 이어가다가 흥효사를 창건해 자신이 발견한 석종을 안치한다. 이때 손순이 창건한 절은 鐘鼓가 달린 큰 절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⁷³⁾ 자신의 옛집에 석종을 안치하고 수리해 만든 작은 절이었을 것이다. 흥효사의 의미는 ‘효를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향덕이나 지은처럼 효행이 지명으로 정착할 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흥효사도 지역민들에게는 효행을 장려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특히 ‘흥효사’라는 의미가 ‘효를 널리 알린다’는 뜻을 고려하면 흥덕왕은 모량리인들에게 ‘효’라는 가치를 실현하면 실제로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손순의 사례로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70) 『삼국유사』 권5, 효선9, 대성효이세부모 “牟梁里[一作浮雲村]之貧女慶祖有兒. 頭大頂平如城因名大城. 家窶不能生育, 因役傭於貨殖福安家. 其家俵田數畝以備衣食之資……”

71) 헌덕왕 13년(821)에도 이미 자식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3년 “春, 民饑, 賣子孫自活”).

72) 『新唐書』 동이열전, 신라조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 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償不滿, 庸爲奴婢”

73) 흥효사 창건에 애장왕대 새로운 불사를 금지하는 조항(『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7년 “下敎, “禁新創佛寺, 唯許修葺. 又禁以錦繡爲佛事, 金銀爲器用. 宜令所司, 普告施行”)을 근거로 흥효사의 창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으리라 본다는 시각도 있다(고소진, 앞의 논문, 2014, pp.9~10). 그러나 애장왕대 금령은 창건을 금지하는 것이지 修葺은 가능하다. 손순의 흥효사는 자신의 옛집에 석종을 안치하고 절이라 이름붙인 것으로 ‘창건’보다는 修葺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의 연구는 주로 사상이나 사회사적으로 접근하던 손순매아조에 대해 손순이 살던 모량리라는 공간적 배경에 주목해 손순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했다.

9세기 전반은 가뭄과 기근, 지배층의 권력다툼 등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늙은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자식을 문을 결심을 했던 모량리 손순의 이야기는 신라 하대 모량리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모량리는 흥덕왕대로부터 100여 년 전인 효소왕대 익선 아간의 비리로 처벌을 받은 지역이며 모량리인에게는 관직진출과 출가 등이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관직진출과 출가는 사실 6두품 이상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모량리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금지당한다면 관직진출과 출가가 가능한 지역 유력세력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려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담이 모량리 평민에게 전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모량리인에 대한 처벌이 언제 거뒀는지 알 수 없는 상화에서 두 가지를 추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흥덕왕 이전에 처벌이 거뒀거나 흥덕왕 이후에 처벌이 거뒀을 경우다. 그러나 이후 모량리인에 대한 처벌이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사료가 명확하지 않아 후자로 생각하고자 한다. 100여 년 동안 처벌이 거뒀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람들의 인식에 박혀 ‘모량리인’에 대한 처벌이 ‘모량리’라는 지역에 대한 처벌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모량리의 특성을 두고 손순의 표창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향덕이나 지은처럼 그들의 효행을 기리는 마을의 명칭도 드러나지 않으며 포상도 매해 50석 씩 받는다. 효행을 기리는 마을의 명칭이 남지 않은 것은 어쩌면 모량리를 제외하고는 손순의 이야기가 그리 크게 퍼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남긴다. 게다가 매해 50석을 받는 것은 대대적으로 표창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더 크다. 즉, 모량리 손순이 받은 포상은 효를 통해 직접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더 강조된 것이다. 이후 석종이 나온 곳의 지명이 잘못 전해지거나 홍효사가 약탈된 것을 보면 이후 그리 강력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흥덕왕은 손순의 사례를 통해 모량리인들에게 ‘효’라는 가치를 실현하면 실제로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신당서』

2. 단행본

강진철, 『개정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1997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66

이홍직,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3. 연구 논문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1: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
회, 1985.

고소진, 『손순매아조와 빈녀양모조를 통해 본 신라 하대 효』, 『대구사학』 115, 대구사학
회, 2014.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손순의 효를 통해 본 ‘표창’의 의미』,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2001.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 1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
구소, 1992.

김상현, 『삼국유사 효선편 검토』, 『동양학』 3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0.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김영하, 『삼국유사 효선편의 이해』,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
구소, 2009.

김재경, 『신라의 밀교 수용과 그 성격』, 『대구사학』 14, 대구사학회, 1978.

김태식, 『『삼국유사』 죽지랑조 탈구축을 통한 신라 화랑과 그 화주』, 『충북사학』 21, 충북
대학교 사학회, 2008.

- 노영근,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 『은지논총』 26, 은지학회, 2010.
- 민병하, 「삼국유사에 나타난 효선사상」, 『인문과학』 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3.
- 손홍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사회변동과 지방사회」, 『대구사학』 135, 대구사학회, 2019.
- 여성구, 「신라 효소왕대의 『삼국유사』 기록 검토」, 『한국학논총』 4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 윤용혁, 「신라 효자 향덕과 그 유적」, 『백제문화』 1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78.
-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동아연구』 2,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
- 이종욱, 「삼국유사 죽지랑조에 대한 일고찰」, 『한국전통문화연구』 2,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 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1, 신라문화선양회, 1990.
- 장정태, 「삼국유사 효선편 연구」, 『한국의 청소년문화』 19,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12.
- 전경미, 「삼국유사 효선편을 통해 본 효행설화의 전승문법」, 『국학연구론총』 20, 태민국학연구원, 2017.
- 정운용, 「삼국유사 손순매아조로 본 신라인의 효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 최혜진, 「효행설화와의 구조와 의미-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6.
- 하일식, 「『삼국유사』의 빈민관련 자료에 대하여」, 『일연과 삼국유사』, 신서원, 2007.
- 한영화, 『한국 고대의 형률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011.
- 홍기삼, 「효소왕대 죽지랑 고」, 『불교학보』 3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3.
- 황병익, 「『삼국유사』 죽지랑조와 「모죽지랑가」의 의미 고찰」, 『어문연구』 3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논문투고일 : 2020. 5. 14 ■ 심사완료일 : 2020. 6. 9 ■ 게재확정일 : 2020. 6. 9

Abstract

The Reward for Sonsun in <Sonsun-Maea> and its Meaning

Lee, Bo-ryeom*

This study attempted a more detailed analysis of Sonsun-Maea, who was mainly analyzed in history of thought and history, noting the differences from other stories in the Hyosun issue of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t was intended to reveal King Heungdeok's intention by analyzing the meaning of Moryangri and Segeub (歲給).

More than 100 years ago from the reign of King Heungdeok, Moryangri was punished for the corruption of Ikseon (益宣) Agan (阿干) of the enzyme kingdom. As people in Moryangri, the measure prohibits them from entering government offices and leaving the country. The advancement and exit of government offices are the exclusive property of influential people. However, if these activities were banned as Moryangri people, the local influential people who were able to enter and leave government offices would have tried to use their power in other ways. It was believed that this burden may have been passed on to the ordinary people of Moryangri. Therefore, King Heungdeok gave Sonsun a gift rather than a one-time reward, which is more helpful to his livelihood than a large-scale commendation for filial piety. Given that the names of the places where the stone bell came from were misrepresented or that Honghyo Temple was looted, it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strongly managed since then. King Heungdeok apparently tried to show through Sonsun's example that realizing the value of filial piety to the Moryangri people can actually get out of the difficulty of living.

In addition, two things can be inferred from the unknown commercialization of when the punishment for Moryangri was collected. One is when punishment was collected before King Heungdeok or after King Heungdeok. However, I would like to think of it as the latter becaus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unishment for Moryangri has been collected. If the punishment has not been collected for more than 100 years, it may have been embedded in people's perception that the punishment for the people of Moryangri was perceived as punishment for the area called

* Reporter, Incheontoday

Moryangri. Unlike the cases of Hyangdeok and Jieun, a kind of taboo about Moryangri was regarded as a reason for the lack of geographical names that showed Sonsun's filial behavior.

Keyword ● the Hyosun issue, Sonsun-Maea, Moryangri, King Heungdeok, Segeub (歲給)